

Newsletter

대러제재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러시아 판례 동향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사태를 기점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대러 경제제재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러시아 안팎에서는 계약이행 실무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둘러싼 제재와 압박 수위가 아직도 굳건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제재대상으로 신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처럼 러시아 계약실무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대러제재를 러시아 사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러제재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 지금까지 축적된 러시아 판례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계약당사자가 제재조치를 준수(comply with sanctions regime)하거나 실행(enforce)하는 것이 러시아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 (B) 대러제재가 러시아 민법 301 조 3 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C) 대러제재가 러시아 민법 451 조에 명시된 일명 '중대한 사정변경(material adverse change of circumstances)'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 (D) 대러제재의 영향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계약이행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이후 소송에서 감안이 될 지.

2 상기 쟁점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러시아 헌법재판소: "계약당사자 자의에 따른 제재조치 준수"는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

헌법재판소 해석에 따르면, 국제법에 위반하는 대러 제재조치를 준수하는 것은, 외국법인을 비롯,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민법상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권리구제 청구는 거부된다는 것이 주된 요지입니다.¹

이러한 해석은 타인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가스터빈 공급계약의 무효확인소송 사건 (*LLC Siemens (Rus) vs. Technopromexport*²)에서 두드러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문제의 가스터빈이 크림반도로 공급될 목적임을 전혀 몰랐음과 동시에, 만일 알았다면 결코 계약을 체결치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러시아법인이 대러 제재조치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 사회의 공공질서를 저해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국이 가한 대러 제재조치를 러시아 자국기업이 자발적으로 따른다면, 해당 행위는 우선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러시아 사회의 공공질서 및

¹ 러시아 헌법재판소 2018.02.13 결정 제 8-P 호.

² 제 9 상사항소법원 2018.04.10 선고 09AP-9815/2018 판결, 사건번호 - A40-171207/17. 모스크바주상사법원 2018.06.27 선고 F05-8233/2018 확정판결.

미풍양속을 저해한 행위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2.2 러시아 대법원: “제 3 자가 대리 제재조치를 준수하는 것은 ‘불가항력’ 혹은 해당 제 3 자(하청업자)에게 도급을 준 계약당사자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다”.

2.2.1 제 3 자가 대리제재에 가담한 까닭에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때의 대리제재는 (러시아 민법 401 조 3 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큼니다.

국방조달과 관련된 **Ministry of Defense vs. Zvezdochka**³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계약불이행이 EU의 대리제재에 따른 해외업체의 납품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국방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대리제재와 계약불이행 사이에는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Keleanz Medical vs. VTC**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만약 해외제조사가 소재국의 대리제재 발효로 러시아 딜러(러시아에서의 판매자)에게 제품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해당 러시아 딜러와 러시아 내에서의 구매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있어 대리제재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2.2.2 불가항력 외에도, 제 3 자의 대리 제재조치 가담으로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로 ‘중대한 사정변경(러시아 민법 451 조)’이 있습니다.

가령, **Ministry of Defense vs. Vector**⁵ 사건에서 재판부는 미국과 EU의 대리제재 발효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된 직접회로제품을 러시아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2.3 허나, 대리제재의 여파일지라도 사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여 사업자로서 관련 조치를 마땅히 마련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VTB vs. Bikmaeva**⁶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해제 청구가 설령 대리제재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이미 상당한 손해를 입어 사업재편을 위한 조치 마련이 부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상적인 비즈니스 리스크로 봐야 하므로, 이 경우 대리제재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3 결론

3.1 현재까지 축적된 판례를 미루어 볼 때, 러시아 재판부는 계약당사자가 스스로 대리제재를 따르는 경우, 그리고 제 3 자의 대리제재 가담으로 계약당사자 모두가 계약이행에 차질을 겪는 경우를 구별하여 판결을 내려 왔습니다:

- (A) 대리제재는 ‘불가항력’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기업 등 제 3 자가 대리제재에 동참하는 바람에 본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선 대리제재와 계약불이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더불어, ‘불가항력(러시아 민법 401 조 3 항)’ 및 ‘중대한 사정변경(러시아 민법 451 조)’ 규정의 폭넓은 적용 가부는 개별 사건의

³ 모스크바주상사법원 2018.02.20 선고 F05-21409/2017 판결, 사건번호 - A40-39224/2017. 러시아 대법원 2013.06.22 명령 제 305-ES18-7696 호에 따라 상소심 심리를 위해 경제분쟁재판부로 사건이송.

⁴ 러시아 대법원 2018.08.20 선고 307-ES18-11373 판결, 사건번호 - A56-89542/2016.

⁵ 제 9 상사항소법원 2018.06.26 선고 09АП-25167/2018 판결, 사건번호 - A40-221653/17.

⁶ 러시아 대법원 2018.05.23 선고 301-ES16-18586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로는 계약의 성격, 공급자의 교체가능성 또는 대체품의 구입가능 여부, 계약당사자들의 관할권 등이 있습니다.

(B) 아울러, 러시아 헌법재판소 해석에 따르면, 만약 러시아법인이 스스로 대리제재에 가담하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큼니다.

3.2 대리제재와 연관된 특정 상황이 장애에 발생할 것을 염두해 계약당사자가 본계약을 해지, 중지, 변경할 수 있는 특권을 계약조건으로 둘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적구속력을 갖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쟁점에 관해서는 러시아 사법부가 판례를 통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쟁점으로, 대리제재 준수/비준수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법상 경영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올해 입법이 예고된 일명 '대리제재가담자 형사책임추궁안'의 영향으로 경영진의 책임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주의: 본 뉴스레터는 공개정보 상에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자료에 수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저희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우측의
Andrey Zharskiy 변호사, Anton
Dzhuplin 변호사, Sergey
Petrachkov 변호사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drey
Zharskiy**

파트너

부동산, 기업법무 / 인수합병(M&A)

E: andrey.zharskiy@alrud.com



**Anton
Dzhuplin**

파트너

기업법무 / 인수합병(M&A), 은행·금융

E: adzhuplin@alrud.com



**Sergey
Petrachkov**

파트너

분쟁해결, 파산·회생

E: spetrachkov@alrud.com

감사합니다.
ALRUD Law Firm